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151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1나11385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20가단115177 판결

전문

원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변론 종결 2021. 5. 12.

판결 선고 2021. 6. 16.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2020. 3. 30.자 매매계약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1. 5. 12.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C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1. 5. 12.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위 합계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과 대출금 2년 거치 3년 상환, 이자를 연 3.18%(매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지급함)로 하되 채무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8. 5. 14. 피고회사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회사는 2020. 3. 17.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피고 B은 2020. 3. 30.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합계 243,100,000원이고, 반면 피고 B의

소극재산은 ① D은행 900만 원의 대출금채무, ② E조합 115,814,623원의 대출금채무, ③ F 70,006,780원의 대출금채무, ④ (주)G 3억 5,600만 원의 대출금채무 합계 591,067,403원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G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4. 8.경 위1)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 C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20. 3.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억 4,660만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 (주)G의 피담보채무는 공동담보 안분에 따라 39,157,145원에 이른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E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F, (주)G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2020. 3. 17.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일부를 기한에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피고회사와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출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부터 2020. 7. 17.(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과 채무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은 채무자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하여 재산이

감소되고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기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주)G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107,442,855원(= 시가 1억 4,660만 원 - 피담보채무액 39,157,145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액인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1. 5. 12.(변론종결시)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보다 많다. 사해행위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는 위 피보전채권액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1. 5. 12.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1. 5. 12.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위 합계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영범

별지